

2026년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 지원 참여기업 모집공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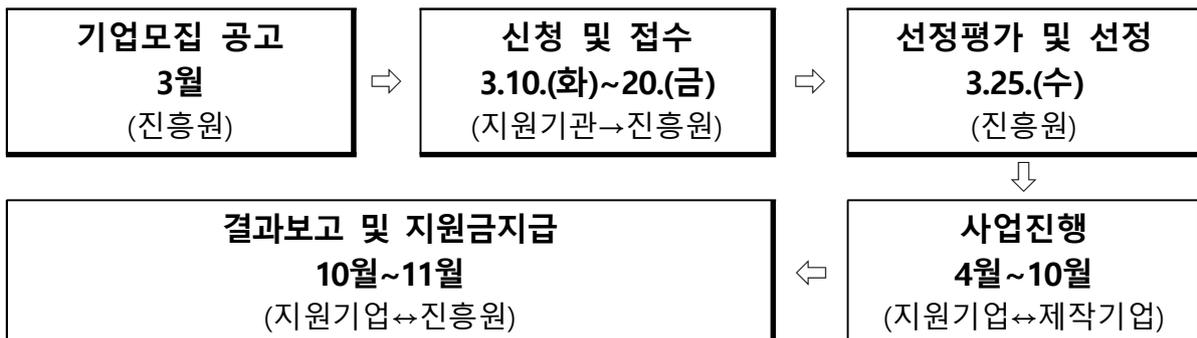
서비스 중심 사회적경제기업의 홍보 역량 강화를 위해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는 「2026년 뉴미디어콘텐츠 제작 지원사업」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바랍니다.

2026년 3월 5일

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장

1 모집개요

- 사업명 : 2026년 뉴미디어콘텐츠 제작 지원사업
- 지원목적
 - 뉴미디어 기반(숏폼·SNS 등) 홍보 콘텐츠를 통한 기업 인지도 제고
 - 온라인 채널 활성화를 통한 신규 고객 확보 및 판로 확대 기반 마련
- 지원대상 : 관내 사회적경제기업 및 사회적경제 연대조직 중 **제품 판매가 아닌 서비스 중심 기업 10개사**(※대전사회적경제혁신타운 입주기업 가점 부여)
- 지원기간 : 2026. 4. ~ 10.
- 지원내용 : 기업 온라인 홍보 콘텐츠 및 홈페이지 제작 지원
- 지원금액 : 기업당 최대 2,700,000원 이내
 - ※ 부가가치세는 지원금에서 제외하며 선정기업이 부담
- 추진절차



2 모집기간 및 신청방법

- 모집기간 : 2026. 3. 10.(화) ~ 20.(금) 18:00까지
- 신청방법 : 대전비즈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
- 제출서류

연번	제출서류	발급기관	비고
1	<양식1> 참가신청서 1부		필수
2	<양식2> 사업계획서 1부		
3	<양식3> 개인(기업)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 1부		
4	<양식4> 요약서 1부		
5	지원기업, 제작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	관할세무서 / 홈택스, 정부24	
6	제작 비용산출 내역 또는 견적서	제작기업 발급	

* 제출서류 일체를 PDF로 합본하여 1개의 파일로 제출

【지원제외 대상】

- 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제2조(정의) 제3호 "사회적경제기업"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
- <참조 1>의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
- 공고일 현재 휴·폐업 등으로 기업 운영 및 금융거래가 곤란한 경우
- 정부·대전시 지원사업 및 유관기관에 참여제한으로 제제중인 기업
- 금융기관 신용불량자,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 체납기업
-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법에 따른 불공정행위 위반자
- 기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업체

3 평가 및 선정

- 평가일정 : 3. 25.(수)
- 평가방법 : 서류평가(10점) + 발표평가(90점)
- 평가기준 ※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참고
 - 서류(10점): 기업업력(*초기기업 성장지원을 위한 신생기업 우대)
 - 발표(90점): 제출서류를 기반으로 5분 발표 + 10분 질의응답
- 선정기업 : 고득점 순으로 10개사 선정(결격사유 발생을 대비하여 예비 순번 부여)
- 결과안내 : 대전비즈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(심사내용 미공개)

4 사업수행

□ 사업수행

- 선정기업이 제작기업 자율 매칭(선택) 후 사업 신청
 - 제작업체는 대전 관내 소재 기업에 한함
 - 샷츠.릴스 및 기업 홍보영상 등의 제작의 경우 영상.영상콘텐츠제작.디자인.광고.콘텐츠 제작 관련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에 한함
 - 홈페이지 제작의 경우 소프트웨어 개발.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.웹사이트 제작.웹디자인 관련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에 한함
- ※ 제작업체의 업태·종목은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확인

○ 추진절차

- 선정기업은 제작기업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진흥원에 제출
- 원가조사 전문기관을 통한 계약금액 산출 ※ 원가조사비는 진흥원에서 집행
- 진흥원 ↔ 선정기업 ↔ 제작기업 간 3자 계약 체결 후 사업추진

□ 최종평가 및 사업비 지급

- 사업 완료 후 10일 이내 결과보고서 및 증빙서류 제출
- 최종평가 후 지원금 지급

5 유의사항

- ‘브랜드디자인 제작 지원사업’ 및 ‘시제품 제작 지원사업’ 과 중복 신청은 불가하며, 기업당 1개 사업만 신청 가능함
- 마감시간 이후 제출한 신청서는 접수하지 않으며 평가에서 제외함
-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, 선정결과는 대전비즈에 공고함
- 신청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신청기업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음
- 신청서 및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판명되거나, 소정의 기일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참여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함
- 지원기업으로 선정되었더라도 지원사업 관리지침 및 기타 제반사항의 위반 내용이 발견될 시 사업을 즉시 중단함
- 사업 중도 포기 시 사업참여 배제, 지원금 환수 등 불이익 조치가 있을 수 있음
- 동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진흥원이 정하는 바에 따름

6 기타문의

- 문 의 처 :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사회적경제지원팀
- Tel : 042-632-3735 / E-mail : ehbaek@djbea.or.kr

참고 1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

표준산업분류	업종
33409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
46102 중	담배 중개업
46107 중	예술품,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
46209 중	잎담배 도매업
46333	담배 도매업 * 담배대용물(전자담배 등) 포함
46416, 46417 중	모피제품 도매업 * 단,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
46463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
47640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
47811 중	약국, 한약국
47859 중	성인용품 판매점
47911, 47912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,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
47993 중	다단계 방문판매
52991 중	통관업(관세사, 관세법인, 통관취급법인등)
56211	일반유희주점업
56212	무도유희주점업
58122 중	경마, 경륜,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
58211, 58212, 58219 중	도박 및 사행성, 불건전 게임 S/W 개발 및 공급업
63999 중	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
64	금융업
65	보험 및 연금업
66	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
68	부동산업 * 부동산의 임대, 구매,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,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·분양, 임대 활동이 포함 * '착한 임대인'에 한해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(68112) 신청 가능 ('20.12.~'21.12.) (3page 참고) * 단, 부동산관리업(6821),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(68221)은 신청가능 -부동산관리업: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(주거용·비주거용 부동산관리) -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: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,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

표준산업분류	업종
76390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
711, 712	법무,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
731	수익업
73904 중	감정평가업
75330	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(예: 탐정업, 흥신소 등)
75993	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
75999 중	경품용 상품권 발행업,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
86	보건업 * 단, 보건업(86) 중 유사의료업(86902)은 신청가능 * 안마원(96122)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 가능(통계청 기준)
91113	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
91121	골프장 운영업
9122 중	성인용게임장, 성인오락실, 성인PC방, 전화방
91221 중	성인용 게임장 운영업
91241 중	복권 판매업
91249	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
91291	무도장 운영업 (예: 댄스홀, 콜라텍 등)
9612 중	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*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-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-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징구
96992	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(점집, 무당, 심령술집 등)
96999 중	휴게텔, 키스방, 대화방
기타	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, 향락 등 불건전 업종, 기타 국민보건,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,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